

소 장

원 고 ㅇ ㅇ ㅇ(ㅇ ㅇ ㅇ) (주민등록번호)

1900년 0월 0일생

등록기준지: ○○남도 ○○시 ○○길 ○번지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번지(우편번호)

피 고 \triangle \triangle \triangle \triangle \triangle \triangle (주민등록번호)

1900년 0월 0일생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번지

주소 : 원고와 같음

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□□

주소 : 원고와 같음

친생부인의 소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와 소외 김□□는 19○○. ○.○.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19○○. ○. ○. 피고를 출산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피고가 친생자로 등재되었습니다.
- 2. 원고는 소외 김□□를 만나 동거생활을 한 날짜가 19○○. ○. ○.이며 이 기간

중 해외지사 파견근무를 명 받고 원고 혼자 10개월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활했는데 귀국 후 원고와 대학 동기인 친구로부터 위 소외 김□□가 새벽 처음보는 사람과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소재 ○○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.

- 3. 그런데 그 후 위 소외 김□□의 외출이 잦아지고 음주까지 하고 귀가하여 원고 가 이를 의심하여 추궁하였더니 소외 김□□는 원고와 혼인 전부터 알고 지내 던 소외 이□□와 피고의 출생일 이전부터 정을 통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소외 이□□에게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- 4. 이에 원고는 소외 김□□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해놓은 상태이며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(원고)

1.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(원고)

1. 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(피고)

1. 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(피고)

1. 갑 제5호증 1내지2 각 자인서(김□□, 이□□)

1. 갑 제6호증 소제기증명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1. 납부서1통

20 ○ ○ . O. O. 의 원고 O O O (인)

○ ○ 가 정 법 원 귀 중
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척기간	*아래(2)참조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원고적격	부(父) 상 대 방	·자 또는 친전 ·모가 없을 때	년자인 모 배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
제출부수	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26조, 민법 제 847조
불복절차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및 기간	·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비 용	・인지액 : 20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 : 당사자수×3,700원(우편료)×12회분		
의 의	자(子)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여 부의 친생자로 추정받으나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 상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말함		

※(1) 관 할 법 원

- 1. 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2.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

※(2) 제 척 기 간

민법 제847조는 "부인의 소는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여 1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었음.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"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"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위헌결정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음. 【1997. 3. 27. 95헌가 14】 현행 민법 제847조는 "친생부인소는 부(夫) 또는 처(妻)가 다른 일방 또는 자(子)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."라고 개정되었음. 한편 "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"라고 개정 됨.